프랑스에서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환경 및 소비자 분야를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부산녹색연합

Ⅰ. 머리말

프랑스의 환경책임 제도는 황폐화 된 환경의 효과적인 회복 또는 피해자를 위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항상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는 때때로 오염자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 없이, 환경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경의 점진적인 악화를 초래한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법 흠결은 보통법(droit commun)의 책임 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상쇄될 뿐이다. 이유인 즉, 종전의 보통법이 인과관계의 증명, 피해 원인의 규명, 다수의 오염자, 만성적인 오염으로 인해 환경에 야기된 피해의 다양성 및 피해의 평가 등과 같은 생태학적 피해의 특이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Ⅱ. 종전의 환경 책임

환경에 관련한 책임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현물배상과 같이, 환경에 야기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특정 활동에만 적용되는 책임제도와 무과실 책임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경피해의 효율적인 배상을 규율하는 고유한 실정법은 없다. 따라서 프랑스법은 현재까지 민법전(Code civil)에 따른 일반적인 민사책임 원칙을 환경피해 소송에 적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의 소송권한이 환경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적용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

프랑스 민법의 범주 내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제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민법전 제1382조와 제1383조가 정하는 과실 책임이다. 동 조는 과실의 존재 그리고 피해와 과실 행위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과실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실제로 민법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두 번째, 민법전 제1384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관리하의 물건책임이다. 물건책임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절대적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판례가 발전시킨 근린폐해이론(近隣弊害 : troubles de voisinage)이다. 동 이론은 쓰레기장 시설, 축사 또는 종이공장 등에서 발생한 소음공해 및 악취공해와 관련된 소송에 적용된다.

프랑스 환경법은 환경보호 단체에게 소송 권한을

인정한다. 환경법전(Code de l'enuironnement) 제 L 142-1조는 자연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단체는 행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가를 받은 모든 환경보호 단체는 그 목적 및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모든 행정 결정에 대항하기 위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 및 토양 · 수질 · 대기오염 방지를 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농지법전(Code rural) 제 L 251-1조에 의거하여 승인을 얻은 환경단체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게 될 환경 시설에 관한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항할 수 있다.[1)]

그러나 판례는 환경보호 단체가 항상 자동적으로 그러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느 환경단체의 규정에 따르면, 동 단체의 활동 범주에는 인권, 동 · 식물류, 토양, 하층토, 해저, 늪 · 습지대, 인간의 삶의 질 등의 감시와 보호가 포함된다. 허가받은 건축 지역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단체가 건축허가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은 동 단체의 활동목적이 건축허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만한 실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아울러 환경법전 제 L 142-2조에서는 단체가 보호하는 집단 이익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오거나 자연과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환경단체는 손해배상청구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환경법전 제 L 142-3조는 환경보호단체에게 피해자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한다. 즉, 다수의 개인이 같은 원인에 기인한 동일인의 행위로부터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어도 둘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모든 재판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 침해로 야기된 전통적인 피해는 이론적으로 민사책임과 환경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피해에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만족을 없애기 위하여 프랑스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법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2005년 2월에 채택된 환경헌장의 헌법전문에의 명시와 환경피해의 예방과 배상에 관한 2004년 4월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4/35/CE)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Class action 절차에서 착상을 얻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다.

Ⅲ. 집단소송절차의 도입과 소비자 분야에로의 확대

프랑스 자크 시락(Jacgues Cirac) 대통령은 2005년 신년연설에서 소비자 그룹과 소비자 단체가 특정 시장에서 계속되어온 그릇된 관행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입법개정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곧이어 집단소송 절차가 프랑스법에 도입될 수 있는 요건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반이 구성되었고 2005년 12월에 프랑스 경제 · 재무 · 산업부와 법무부에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개혁안이 제출

1) CAA de Paris, 27/01/2004, Société routière de l'Est parisien

2) CAA de Paris, 30/12/1993, Association pour la sauvegarde du patrimoine martiniquais, confirmé par un arrêt de Conseil d'Etat 09/12/1996

되었다. 하지만 2006년 여름으로 예정되었던 최종 법안 작성이 과중한 입법일정으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자크 시락 대통령의 담화는 소비자 그룹과 단체만을 명시하였지만, 정부의 소비법전 개혁안은 집단소송 절차가 환경 분야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소비법전 개혁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소송은 소비자의 물질적 피해(préjudice matériel)의 배상이 목적이며 정신적 피해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단소송은 1인당 손해배상액이 최고 2,000 유로 이내인 분쟁에만 적용되며 소송절차는 다음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판사는 당사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단 판사는 집단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이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액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판사는 소비자가 입은 개별적인 피해액의 산정을 유예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책임 있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요청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판사는 재차 사건의 심리일을 정한다.

두 번째 단계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안 할 수 있으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는 즉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한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의 손해배상금의 제의가 없었다거나 그 제의가 명백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자동적으로 사업자에게 할당된 손해배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서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판사는 약식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 청구를 결정한다. 이 때 소송대리의 참석은 강제가 아니다.

이번 소비법전 개혁을 위한 정부법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① 동 집단소송절차는 원고 집단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in 시스템(Mécanisme de l'accord exprés)에서 착안된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모든 소비자는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관련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상기 이 단계식 집단소송 방식은 기업 이미지의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일단 판사가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잠재적 피해자의 추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판사가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은 즉시 소멸한다.

③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할당된 손해배상금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벌금으로써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처벌적 피해(Dommages punitifs)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처벌적 피해가 예방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퀘백의 모델에 따른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비법전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안한 집단소송절차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반하는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소송이며 마지막으로 소비자 단체가 최

소한 두 명의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고 그들의 개별적인 피해배상을 획득할 수 있는 공동대리소송이다.

실제로 이번에 제안된 집단소송절차에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소비자 단체의 역할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야기된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지 소송을 제기할 뿐이다. 한 가지 지적하여야 할 점은 소비법전 개혁안에 위임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기 집단소송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즉, 피해를 입은 각각의 소비자가 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집단소송 모델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단독으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와 대기업간에 집단소송을 촉진시키며 양자간 힘의 균형을 상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Ⅳ. 맺음말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유사한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을 꺼린다. 이는 실제로 입은 피해와 소송비용간의 불균형 그리고 모든 거대 수단을 동원하는 기업과 소비자 개인간의 비형평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집단 소송제도는 대기업과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개별적으로는 극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과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준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수장인 기 가니베(Guy Canivet) 판사는 프랑스 법제도에서 그러한 집단소송절차의 부재는 상당수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대기업이 법에 반하는 정책의 채택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3] 그러나 프랑스에 집단소송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프랑스법은 미국식의 처벌적 손해배상(프: dommages et intérêts punitifs, 영: punitive damages) 개념을 알지 못한다. 또한 노동법(Code du travail)에 의하면 노조는 임금 노동자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상의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법 역시 이 점에 관하여 노동법을 모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를 위한 이러한 유형의 일반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소비법전 개혁안 제4부 제2편 제3장 – 집단소송 –

제 L 423-1조

집단소송은 동조 제 L 423-2조에서 제 L 423-9조가 정하는 요건 하에서 물질적 피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단,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동일 사업자의 계약의무의 불

3) La Tribune, rubrique Hommes et expertises, 16 mai 2006

이행 및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입은 신체적 완전함 또는 수익권 문제에 대한 침해는 배제한다.

제 L 423-2조

소송은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적 수준의 그리고 동법전 제 411-1조에 준거하여 승인된 소비자 단체에 의해 제기된다.

제 L 423-3조

제 L 423-1조에 언급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송 기간 중 그리고 늦어도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판결 선고일까지 집단 소송의 결과 생기는 소멸시효의 혜택을 받는다.

제 L 423-4조

판사는 관련 사업자의 비용으로, 적절한 모든 방법으로, 제 L 423-1조에 규정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결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선언하는 판결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명한다.

제 L 423-5조

책임에 대해 선언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격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소비자는, 집단 소송에서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이 국사원 명령에서 정하여진 최고액을 초과함이 없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업자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제의할 수 있으며 또는 국사원 명령으로 정하여진 조건과 기한 내에서 거절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제 L 423-6조

사업자의 제의를 거절하거나 어떠한 손해배상 제의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책임에 관한 선언적 판결을 내린 재판소에 청구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제 L 423-7조

정해진 기한 안에 손해배상금의 제의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안한 제의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판사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할당된 손해배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써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선고할 수 있다.

제 L 423-8조

동 장의 적용방법은 국사원 명령에 따라 정한다.

제 L 423-9조

집단소송의 관할권한을 갖는 지방법원은 국사원 명령에 따라 정한다.

정 영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